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2.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**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**
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12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**연 정 수**

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○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제1차 출자 후 시설준공에 따른 반석역 환승주차장 등 추가로 발생한 현물 및 자산에 대해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,「지방재정법」제18조「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」제4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출자자산

– 도시철도 1호선 제1차 출자 후 준공한 반석역 환승주차장 등 추가로 발생한 현물 및 시설물 등

○ 출자자산 가액결정

– 건설사업비 지출액을 적산,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한 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기관이 검증한 자산평가액

○ 출자 자산액

(단위 : 원)

구 분	출자 자산액	자 산 내 역
계	6,035,874,390	
공유재산	4,205,092,350	토지, 공작물, 지상권
기 타	1,830,782,040	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(공유재산 제외)

3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제1차 현물출자 후 추가로 발생한 시설물 등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○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제1차 현물출자는 지난 2008. 10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총 자산액 1조 5,987억 9,061만 4,494원과 부채인계액 2,073억 8,737만 7,085원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며,

○ 제1차 현물출자 후 준공한 반석역 환승주차장 등 추가로 발생한 현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2차로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금회 출자 자산액은 토지, 공작물 등 공유재산 42억 509만 2,350원과 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18억 3,078만 2,040원 등 총 60억 3,587만 4,390원임.

○ 도시철도 1호선 제2차 현물 및 시설물 등을 도시철도공사에 추가로 현물 출자할 경우 시설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과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,

○ 금회 출자에서 제외된 자산인 운영시스템 BLT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료 상환이 만료되는 2011년까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상환 후 추가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상환하지 않은 부채에 대한 예산확보와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